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경찰청장 등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부여〉

■ 허성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355호)

2025.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 기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허성무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12. 10.
3. 회 부 일 : 2024.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의 장의 수사 실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에서의 실종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관서가 실종자 수색 관련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도 앞의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여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실종아동 발견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수색·수사의 실시 및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안 제9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u>경찰관서의 장</u> 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u>경찰관서의 장</u> 은 실종아동등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① <u>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u> ----- ----- -----. ② <u>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u> ----- ----- ----- ----- ----- ----- ----- ----- ----- ----- ----- -----

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
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
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
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
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
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
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
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
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서
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
경찰관서의 장-----

-----.

1. ~ 4. (현행과 같음)

③ -----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
양경찰관서의 장-----.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과 해양경찰
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경찰관서의 장과 해양경찰
관서의 장은-----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등) ① 경찰관서
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

1. ~ 4. (생략)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가 수집된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illegible]

1. ~ 4. (현행과 같음)

③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

③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
관서의 장-----

-----.

1. ·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금 실종아동등의 가족 등을 동 반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u>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은</u> 실종 아동등의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 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제1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의2. (생 략) 1의3.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u>경찰관서의 장</u>의 요청을 거부한 자 2. ~ 4. (생 략) 제18조의2(벌칙)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u>경찰관서의 장</u>의 요청을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u>보건복지부장관,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u>----- ----- ----- ----- -----. 제18조(벌칙) ----- -----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u>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u>----- 2. ~ 4.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벌칙) ----- -----<u>경찰관서의 장 또는 해양경찰관서의 장</u>----- -----.
--	---

현행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CCTV, 카드내역 등 정보요청권 및 불응 시 벌칙부과 등의 수사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음.¹⁾ 그러나 해양경찰청의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해상 실종자가 2019년 16명에서 2023년 45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해상 수색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에는 관련 권한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5년간 실종자 통계>

구분	계	18세 이상	18세 미만
2023년	45	45(해상 42, 육상 3)	-
2022년	40	40(해상 39, 육상 1)	-
2021년	40	40(해상 39, 육상 1)	-
2020년	28	28(해상 26, 육상 2)	-
2019년	16	16(해상 16)	-

※ 육상 실종자(7명) : 교량투신 4명, 해루질 2명, 선착장 1명

※ 자료: 해양경찰청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해양사고 총 3,092건 중 어선 사고가 2,047건(66.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부산·울산·경남지역은 최근 5년간 전체 사고의 20.4%가 발생함. 특히 해양 안전사고의 사망률이 39.3%에 달하는데, 이러한 통계는 해양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신속한 초동대응과 전문적 수색 역량이 필수적임을 보여줌.

1) 「실종아동법」상 경찰의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한 권한

① 개인위치정보 수집(법 제9조) ② CCTV, 카드내역 등 이동경로정보 수집(법 제9조의2)
 ③ 정보발령 등을 위한 공개수색(법 제9조의3) ④ 관련장소 출입·조사권한(법 제10조)
 ⑤ 실종아동 등 수색을 위한 협조요청(법 제16조) ⑥ 거부 시 벌칙* 부과(제18조, 제18조의2)
 *(벌칙)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 시 △제9조 위반 : 2년↓, 2천만원↓ △제9조의2 위반 : 1년↓, 1천만원↓

또한, 해양경찰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²⁾,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³⁾ 등에 따라 해양에서의 수색 사무를 관할하고 있고, 2017년 9월 체결된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간 수사 관할에 관한 업무협약'⁴⁾에서도 해양 및 해양 관련 장소에서의 수사를 해양경찰청이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양에서의 실종자 수색·수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됨.

이에 대해 경찰청은 관련 법령상 해양경찰청은 해상에서의 수색 사무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해상에서의 신속한 실종아동등 수색·수사를 위해 해양경찰에도 실종아동법상 자료요청권 등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어 수용한다는 입장이며,

해양경찰청은 대형여객선, 여객선터미널, 항포구 등에서 실종아동등 발생 시 신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경찰청장, 경찰관서의 장으로만 규정된 「실종아동법」에 해양경찰청, 해양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2) 「재난안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3) 「수상구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경찰청·해양경찰청 간 업무협력 양해각서

제4조(수사관할) ② 다음 각 호의 해양 관련 범죄는 해양경찰청에서 우선적으로 관할한다.

1. 해양에서 발생한 범죄

2. 해양에서 발생하여 육상으로 이어지는 범죄

5. 선박, 조선소, 해양플랜트, 물양장 등 해양과 관련된 장소에서의 해양 관련 범죄

문 의 처
02)6788-5344